

물 관리에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



최 동 진 ▶▶▶

국토환경연구소 소장
water@eco.re.kr

1. 문제의 제기

한 국가의 물관리 행정의 체계는 그 국가의 자연적 조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역사적 특징을 반영한다(표 1). 여러 나라의 물관리체도를 비교해 보면, 물관리체계 발전의 일반적인 경향과 각 국가의 개별적 특성이 나타난다. 최근의 물관리체계의 일반적 경향, 즉 공통적인 발전의 방향은 유역통합관리체계로의 전환과 지방자치단체와 유역주민의 주도적 역할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물관리체계는 중앙집중형 행정체계와 아시아 문순의 기후적 특성을 반영하여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중국이나 일본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중앙과 지방의 역할의 측면에서 보면, 물관리의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매우 적극적이고 중요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주로 치수문제와 관련이 크다. 대규모 홍수피해가 잦기 때문에, 치수는 중앙정부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국가의 의무로 인식되어 왔다. 먹는 물의 공급도 중요한 사회기반시설로서 국가가 주도하여 주요한 시설들을 건설해 왔다.

또한 최근의 통합적 환경관리의 추세 역시 물관리에서 중앙정부의 비중과 역할을 높인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천수질관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와 수질총량관리제도 등의 도입은 물관리에

서 중앙정부의 역할을 크게한 요인 중의 하나였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물 관리는 중앙정부의 부처와 그 산하기관들이 주도하여 왔으며, 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부의 중앙부처만 5개에 이르고 그 산하기관(4대강 홍수통제소, 지방국토관리청, 유역 및 지역환경청, 소방방재청, 한국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한국농촌공사 등)은 수십 개에 달한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의 전통과 우리나라의 기후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 주도의 물관리체계에 대해 최근 변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한 변화를 요구하는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것들을 주요한 예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공공부문의 역할의 변화이다. 비단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포함하여 공공부문의 역할이 과거에 비해 축소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물관리에서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고, 가능한 정부의 역할을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려는 것이 선진국들의 일반적인 추세이며 특히 유럽과 미국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강하다. 사업은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계획과 규제를 담당하는 방식이다.

물론 물관리의 공공적 특성으로 인해 수도사업과 같은 경우 공공부문이 직접 담당하는 경우가 많고,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국가가 직접 치수를 책임져 왔지만, 정부와 공공부문의 역할은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측면에서는 기능을 가능한 축소하고 있다. 일본에서 2001년 정부구조개혁을 통해 수자원개발공단을 수자원기구로 전환한 것이나, 미국의 수자원 개발 사업을 주도했던 공병단과 개척국의 역할이 변환한 것이 그러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표 1. 국가간 수자원 제도의 비교

구분	물관리제도의 특징	용수 공급	하폐수처리	치수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질규제업무는 연방정부(환경부), 수자원개발과 공급은 다양화되어 있지만 주가 주로 관할 연방차원의 중요한 수자원사업은 공병단과 개척국 등에서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의 업무 대규모의 개발과配水에는 주, 연방이 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가 관할 일부는 민간에 관리 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해는 자연재해로 행정책임이 아님 범람원관리·토지이용규제는 지자체의 업무이며 주가 지원 연방은 홍수보험을 제공 연방정부는 주 사이의 통상에 관한 것에만 관여할 수 있음(헌법규정)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질업무는 환경성이 관할하고 댐건설과 홍수관리 등은 국토교통성에서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정촌(지자체)의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정촌(지자체)의 업무 정비사업에 국가가 광범위하게 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수는 국가의 책무 (1급하천의 지정구간, 2급하천은 지사가 법정수탁, 준용하천은 시정촌이 수탁)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질업무는 환경부, 수자원개발은 건설교통부가 주로 담당. 수량업무 중 농업용수, 발전용수 등의 업무는 농림부, 산자부 등으로 다원화됨 물기본법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는 중앙정부관할 지방상수도는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의 업무 정비사업에 국가 보조, 적극적 민간위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하천은 국유이며 국가가 관리 범람원 주변에 대규모 인구가 집중되어 있음 치수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책무 (국가하천과 지방1급 하천의 경우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지방2급하천은 지자체가 관리)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역중심의 관리(유역위원회에서 계획수립, 유역재정청이 실행) 1992년 수법이 수자원관련 기본법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자체연합이 담당 민간에 운영 관리 위탁(양여권)하기도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역위원회에서 요금 등을 결정하고 유역재정청이 징수, 수처리시설의 정비에 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세기 이후 치수는 연안주민의 책임 법률적으로 국가에는 치수 책임이 없으며, 연안주민이 조합을 만들어 대응하는 하천은 존재 1964년부터 유역관리가 시작됨 (수법 제정)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단위와 유역단위가 혼합된 형태 지역수조합이 중심 1996년 연방수자원관리법이 수자원관련 모법이라 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의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수도는 지자체가 관할 대규모 처리장의 경우 주의 보조가 이루어지기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수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책임 행정상으로는 주, 연안지자체가 대응(책무는 아님) 라인강 하류는 물관리(제방)조합이 치수를 담당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식품농촌성 관할하며, 수자원사업은 민영화되고 정부는 규제에 치중 유역중심의 물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의관할이지만완전민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이지만 완전민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가능지역이 넓고 범람원이 좁음. 치수는 연안주민의 책임 간척지등에서는 물관리조합으로 대응하기도 함.

※ 자료 : 1) 건설교통부, 2003, 수자원관련법령체계개선방안연구
 2) (재)일본국토개발기술연구센터, 1996, 제외국의건설관련제도

두 번째는 물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이다. 댐건설과 광역상수도의 건설, 대대적인 하천개발사업으로 대표되는 사회의 기반시설로서의 수자원시설의 건설이 완성에 접어들면서, 물관리의 중심이 개발과 건설보다는 운영과 유지관리로, 구조적 대책보다는 비구조적 대책으로 옮겨가고 있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건설과 개발에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주도과 자원조달이 중요하지만 시설의 유지관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치수 대책 등에서 비구조적 대책은 대부분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물관리체제도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유역의 주민이 주도한

표 2. 일본의 특수법인등정리합리화계획 중 물관련 분야

특수법인 등 정리합리화계획의 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3개 특수법인 및 인가업인을 대상으로 사업 및 조직 형태를 검토하여 각 법인마다 개별적인 개혁 사항을 제시 • 163의 특수법인 중에서 국가의 정책 실시 기관 이외의 법인으로서 정리해야 할 공제 조합 45법인을 제외한 118법인에 대해서, 17법인은 폐지, 45법인은 민영화 등, 38법인은 36개의 독립 행정법인으로 전환
수자원 개발공단	사업	<p>【수자원 개발 시설의 건설 및 관리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수요의 침체 등을 감안하여 신규 개발 사업은 실시하지 않는다. 또, 새로운 물이용의 전망이 명확하지 않은 계획 조사 중인 사업의 중지, 실시 중인 사업의 사업 규모의 축소 등을 통하여, 전체적인 사업량을 감축한다. • 수자원개발기본계획(Full Plan)은 물의 수급 계획과 실적에 관해, 계획의 근거가 되는 경제 성장률 등을 포함한 계획과 실적을 대비하여 계획과 실적이 괴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요인을 포함해 정기적으로 정보를 공개한다. 또, 수급 계획과 실적이 일정 정도 이상 괴리했을 경우에는, 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을 규칙화한다. • 비용 의식을 높이는 관점에서, 새롭게 물 이용자가 부담금을 지불 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한다.
	조직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 행정법인으로 전환.
일본 하수도 사업단	사업	<p>【하수오니 광역처리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오니 광역 처리사업은 폐지한다. 덧붙여 이미 설치된 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현지 지방공공단체와의 조정·협의를 거친 다음, 현지 지방공공단체에 이관한다.
	조직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공동 법인(가칭) 또는 민간 법인으로 전환

관리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1987년 하천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하천공사·하천유지제도(시정촌 공사제도)를 만들어 국가가 관리하는 1급 하천의 직할구간에 대해서도 도시정비와 연계한 하천정비, 생태계 보호 등 하천환경 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치수상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시정촌장)이 하천관리자와 협의하여 시정촌 공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일본국토교통성 하천국, 1999, '하천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의 역할분담에 대하여' 중간답신).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국제적으로 중앙정부 주도의 강력한 물관리체제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유역주민의 참여가 강조되는 유역통합관리체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물관리체제의 변화의 주요한 한 측면이고 이와는 사뭇 다른 측면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치수대책과 수리권 관리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유럽과 미국과 같은 나라들은 기후와 국토 특성으로 인해 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홍수피해가 상대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치수가 중앙정부의 주요한 정책적 관심사였던 우리나라와는 달리 홍수대책은 일차적으로 유역 주민의 책임이었고, 지방정부의 문제였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이들 나라에 대규모 홍수가 빈발하면서 홍수대책이 국가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고, 이와 관련한 기구나 조직을 구성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국가와 중앙정부의 권한과 의무를 유역과 지방정부, 민간으로 최대한 이양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지만 물관리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이다.

수리권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연안권과 선점권으로 대별되는 서구의 수리권체제는 전통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와 협상이 관리의 일차적인 수단이었다. 지역마다 서로 다른 물관리 전통이 있어서 그러한 지

역적 특성이 합당한 수리권의 관리체계가 유지되어 왔다. 선점권이든 연안권이든 물 이용에 대한 일차적인 권리는 유역주민에 있었다.

미국의 수리권은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지침에 의해서 규제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별로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법원에서 판단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이러한 서구의 수리권 체계에 최근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수리권에 대한 국가와 중앙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라는 점이다. 물부족이 심화되고 수리권 갈등이 빈발함에 따라 기득수리권을 보장하는 문제보다 기존의 수리권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재분배해야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게 되었다. 특히 광역적 차원에서 물의 이동과 배분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서 수리권에 대한 국가의 허가와 취소 및 조정의 역할이 강조되게 되었다.

수질관리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수자원의 개발과 관리의 중심이 지방정부와 민간으로 이관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인데 비해, 하천의 수질의 관리는 통합되고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 대세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환경부는 수질관리 측면에서 그 권한과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유럽의 경우 하천환경의 관리는 일국적 차원을 넘어 EU차원의 통합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물관리체계의 변화에서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을 얘기할 때, 일률적으로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한다거나,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중앙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한 분야가 있으며 그렇지 않은 분야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은 기존의 중앙정부의 업무를 대신하는 측면보다는 새롭게 요구되는 역할, 즉 지역특성을 반영한 물관리 정책의 추진과 이해당사자와 유역주민이 주도하는 시책을 지원하는 역할이 중요해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과 관련된 주요 쟁점

일반적으로 물관리에서 국가와 지방의 역할분담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국가는 물관리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가능한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매우 중요한 업무에 한하여 관리한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물관리 시책을 추진하고, 개성이 풍부한 자립형 지역사회의 형성에 기여도록 유역에서 다양한 주체가 물관리에 폭넓게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물관리체계에 관한 개선방향을 논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 문제를 이러한 원칙적인 접근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대목이 많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몇가지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2.1 유역관리위원회의 구성

최근 몇 년 동안은 물관리체계 개편을 통한 활발한 논의의 시기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른 발제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물관리체계의 개편의 궁극적인 방향에 대해서 보자면 유역을 기본단위로 하는 유역통합관리체계의 구축이라는데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러한 논의의 근거에는 상당한 정도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포함되어 있다.

통합적인 환경관리에 큰 비중을 두고 물관리체계를 보는 관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지향적 성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며 당분간은 중앙정부가 물관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강력한 중앙집중형 통합 물관리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수자원의 개발과 관리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관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물관리 능력과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할 의지나 계획이 없고 인력이나 전문성도 부족하다고 본다. 따라서 유역관리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보다는 아직은 중앙부처 산하의 유역별 실무위원회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중앙정부 차원의 물관리체계의 개편에 대해서는 매우 서로 다른 방향을 설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최근에 입법예고된 물관리기본법안에서 유역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빠진 것은 이러한 문제의식들이 반영된 타협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앞에서 말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의구심과 문제의 지적은 일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계속 중앙정부 주도로 물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무리가 있다. 지방의 기능과 역할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떠한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물관리 역량을 함양하고, 유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더 고민해보아야 한다.

물관리의 단기적인 성과의 달성과 효율향상도 중요하지만 유역통합관리라는 장기적인 목표의 달성은 결국은 지방정부의 “Capacity Building”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지난 물관리기본법안에서 유역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 빠진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2 지역수리권의 문제

상류지역에 대한 지나친 규제에 대한 반발과 기득수리권을 둘러싼 갈등 등을 배경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지역수리권의 보장의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을 요구하는 상류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 지역수리권 보장을 요구하는 논리 자체만을 보면, 광역적 조정과 통합적 관리가 강조되고 있는 최근의 수리권 관리 추세와 맞지 않고 지역적 이해를 지나치게 반영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식의 문제제기는 어떠한 현재의

수리권체계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다. 즉, 상류와 하류의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수리권 관리체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수리권의 보장 문제는 지역이기주의적 요구만으로 보기보다는 유역차원의 수리권 관리라는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제도로 인한 부담과 편익이 지역간에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분배될 수 있도록 재조정 되어야 한다. 특히 이는 댐원수대를 포함한 물값 및 물이용부담금의 조정 문제와 결부시켜서 검토해야 한다.

2.3 하천등급의 조정

하천법을 개정하면서 국가하천의 비율을 늘리는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국가하천에 대한 정비가 거의 마무리된 반면, 지방하천과 소하천은 방치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중앙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수계를 일관한 정비를 위해서도 중앙정부의 하천관리에 대한 역할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국가하천 확대 방안이 제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하천의 확대가 중앙업무의 지방이관이라는 분권화의 일반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고, 그동안 제방축조 위주의 획일적인 치수대책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국가하천의 확대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지방정부의 취약한 재정 능력과 지방하천과 소하천에 대한 투자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의 예산을 그동안 방치되어 왔던 중소하천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중앙정부가 이들 하천의 관리를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그 방식이 국가하천의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되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있다.

하천등급조정의 배경이 되었던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역할을 지속하면서도 지방정부의 역할과 능력을 함양하고, 수계관리 혹은 유역관리를 지향할 수 있는 하천등급체계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2.4 물산업의 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물산업을 육성하는 문제와 더불어 수도산업 구조 개편 문제가 국가의 주요한 정책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수도산업 구조개편의 주요한 배경 중의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의 상하수도 관리 능력에 대한 불신과 회의가 중요한 배경으로 되고 있다.

물론 사업과 규제를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규제만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론에 관한 원론적 강조가 있긴 하지만, 그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민간에 넘긴다는 의미가 강하다. 중앙과 지방의 역할 조정과는 약간 다른 문제이기는 하지만 물관리업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변화와 관련된 문제이며 구조개편의 배경이 되었던 문제점은 다른 문제에서 제기되었던 것들과 유사하다.

3. 중앙과 지방의 바람직한 역할 분담

물관리체계 개편의 문제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은 단순히 중앙정부의 물관리 업무를 이관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지방정부의 물관리 능력의 함양과 책임을 높이는 차원에서 보아야 할 것 같다. 지역수리권의 문제를 제외한 다른 문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태도는 적극적으로 물관리 업무를 담당하려 하기 보다는 오히려 중앙정부가 현재의 관리업무마저 담당해줄기를 바라는 경향까지 있다. 하천등급의 조정과 수도사업의 구조개편, 물관리체계의 개편 등의 문제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체로 나서기보다는 오히려 복잡한 물관리 업무로부터 벗어나고 이를 중앙정부나 다른 기관에서 맡기를 바라는 경우조차 있다. 이러한 문제의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오랜 국가중심의 물관리 전통도 관련이 있지만, 다른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지방자치단체가 물관리를 위한 재원을 조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물관리업무에서 국가의 지방의 바람직한 역할 분담을 위해서 검토해야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현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두가지를 들라면 유역관리체계의 구축과 자주적인 재원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물관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할 때 생기는 많은 문제들은 유역을 단위로 한 관리체계로 전환할 경우 해결될 수 있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한 관리체계가 유역관리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고, 어느 정도 방향에 있어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물관리 업무가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물관리에 소요되는 대부분의 재원을 중앙정부의 지원에서 충당하기 때문이다. 일부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물관리 업무의 추진이 곤란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역이나 지방차원에서 자립적으로 물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재원의 확보는 지방정부의 일반회계로부터 분담하는 방식이 아닌, 물관리의 수혜자로부터 충당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의 물관리를 위한 자체적인 수입금은 상하수도를 제외하고는 안정적인 재원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열악하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하천점용료와 골재채취 수입 등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물관리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는 기존의 중앙정부 지원금의 운용방식과 물이용 부담금, 취수세 등 종합적인 물관련 재원의 조달과 배분에 대한 개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